

#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5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 사항(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)을 「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에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(안 제6조)
- 나.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32조의2)
- 다. 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2조의3)
- 라. 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2조의4)
- 마.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(안 제1조, 제5조, 제12조, 제15조, 제30조, 제33조)
- 바. 부칙 : 「안산시 시세 기본조례」 제7조, 제7조의2, 제7조의3 각각 삭제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 - 입법예고 : 2025. 8. 6. ~ 2025. 8. 26. (20일간)

### 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경기도지사”를 “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초일은 산입”을 “첫날은 포함”으로, “산입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제외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”를 “선정 대리인”으로 한다.

제9장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소유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

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32조의3(선정 대리인의 신청·통지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청구등”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청구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 대리인”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4(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

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청구등을 대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10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

제33조제4호 중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

소관부서		감사관
입 안 자	감사관	박은주
	감사팀장	서정환
	담당자 (연락처)	이세나 (481-2076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</u>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</p>	<p>제5조(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4조-- -----</p>
<p>제6조(납세자보호관의 업무)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</p>	<p>제6조(납세자보호관의 업무)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12조(고충민원의 대상 제외)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분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 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감사원장, 행정안전부장관, <u>경기도지사</u>,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(고충민원의 처리기간)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(<u>초일은 산입하되, 공휴일·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</u>)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12조(고충민원의 대상 제외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,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고충민원의 처리기간) ① ---- -----<u>첫날</u> <u>은 포함</u>----- ----- <u>제외한다.</u> ----- 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·위원회 심의·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·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<u>1회에 한하여</u>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30조(납세자권리현장 준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<u>기타</u>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장 <u>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 차례에 한정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제30조(납세자권리현장 준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9장 <u>선정 대리인</u></p> <p>제32조의2(소유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</p> <p>제32조의3(선정 대리인의 신청·통지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청구등”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청구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 대리인”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<u>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불복청구인·대리인 지정일자·결정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32조의4(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 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<u>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33조(업무의 범위) 영 제51조의 2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li>4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0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</u></p> <p>제33조(업무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----- ----- --</li> </ol>